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국민의힘 광진구 제2선거구 출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성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이 조례안은 개정된 상위 법령에 따라 자치경찰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임기 만료 120일 전에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구성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하고,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미리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의 입법 취지와 내용을 잘
살펴주시고, 시민의 삶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선배 ·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